

의안번호	제 206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2월 1일 (제 267 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1월 14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
----------	-----

제출연월일 : 2008. 1.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조정(안 제3조제2항)
 -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라.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안 제6조제2항)

마.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9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취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p> <p>2. (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임한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p> <p>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2.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 4. (생략)</p> <p>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p>	<p>제3조(기능) ①----- -----.</p> <p>1.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p>

<p>호로 한다.</p> <p>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p> <p>① (생략)</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조사의뢰 및 동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p> <p>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임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p> <p>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임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p> <p>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p> <p>-----.</p> <p>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	--

<p>2. <u>법 제8조의 2의</u> <u>규정에 의</u> <u>한 조치</u></p> <p>3. (생략)</p> <p>4. <u>법 제23조 내지 법 제 29조</u> <u>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u></p> <p>③ ~ ④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제9조</u> (생략)</p>	<p>2. <u>법 제8조의 2제 1항에 따른 조</u> <u>치 또는 법 제 8조의 2제 2항에</u> <u>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u> <u>대한</u> <u>통보</u></p> <p>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24조부터 법 제 29조까</u> <u>지의 규정-----</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u> <u>한다.</u></p> <p><u>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u> <u>매년 충청북도의회 제 2차 정례</u> <u>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u> <u>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u> <u>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u> <u>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u> <u>출하여야 한다.</u></p> <p><u>제10조</u>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 (심사결과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경고 및 시정조치
-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

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